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38

제출연월일 : 2008. 5. 20.

발 의 자 : 조신형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와 북한 지역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다. 합의사항 :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자치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법인, 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보건・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또는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경비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하며, 서기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서명

의원명	서 명	비 고
조 신 형	[illegible]	
오 영 세	[illegible]	
오 정 [illegible]	[illegible]	
곽 영 교	[illegible]	
이 정 희	[illegible]	
김 관 우	[illegible]	
박 수 범	[illegible]	
박 희 진	[illegible]	
김 채 훈	[illegible]	
권 형 례	[illegible]	
김 인 석	[illegible]	